

—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우리고장의 인물에 대한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
- 새마을운동, 자연보호운동의 정신을 계승· 발전시켜 구미공동체 형성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.

3. 주요내용

【 명칭변경 】

- 제2조(명칭 및 위치)
 - 구미체육관 ⇒ 박정희체육관
- 제3조제1호(정의)
 -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미시가 설치 운영하는 구미체육관 및 시민운동장을 말함. ⇒ 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
- 별표1, 2, 4(사용료 구분)
 - 구미체육관 ⇒ 박정희체육관

4. 참고사항

- 천안시종합체육시설조례외 2

5. 검토의견

- 제66회 정례회시 가결된 조례안에 수정안입니다.
- 단순 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으며 유사한 조례로는 천안시종합체육시설조례중 『유관순체육관』,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조례 등이 있음.